

[서식 예] 대여금청구의 소

소 장

원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(우편번호 ○○○○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피 고 ㅇㅇㅇ (주민등록번호)

ㅇㅇ시 ㅇㅇ구 ㅇㅇ길 ㅇㅇ(우편번호 ㅇㅇㅇㅇㅇ)

전화 · 휴대폰번호:

팩스번호, 전자우편(e-mail)주소:

대여금청구의 소

청 구 취 지

- 1. 피고는 원고에게 금 2,3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○○○○. ○. ○○.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%의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%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.
- 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3.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.

라는 판결을 원합니다.

청 구 원 인

1. 금전 대여 및 채무불이행



원고는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. \triangle . 경 같은 직장에 다녔던 친구의 동생인 피고가 교통사고에 따른 합의금 및 벌금을 납부하기 위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,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. \triangle . \triangle . \triangle . \triangle . \triangle 0,000,000원, $\triangle \triangle \triangle$. \triangle . \triangle . \triangle 0,000,000원 합계 3,000,000원을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대여하였습니다.

이후 피고는 ▽▽▽. ▽. ▽. 300,000원, ▽▽▽. ▽. ▽. 200,000원, ▽▽▽
▽. ▽. ▽. 200,000원 합계 700,000원을 변제한 이후 나머지 잔액 2,300,000 원을 현재까지 변제하지 않고 있습니다.

[갑 제1호증 계좌별거래내역(XX은행), 갑 제2호증 계좌별거래내역(YY은행) 각 참조]

2. 변제기의 도래 및 지연손해의 발생

원고는 피고에게 기한의 정함이 없이 금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위 금원을 대여한 뒤 원고의 변제 요청에 따라 △△△△. △. △.경부터 채무의 일부변제를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변제기는 이미 도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최후로 채무를 변제한 ▽▽▽▽. ▽. ▽.의 다음날인 ▽▽▽▽. ▽. ▽. ▽.부터 원고에게 민법 제397조 제1항에 따른 민법상 법정이율 상당의 지연손해배상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.

2. 결 론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,300,000원 및 이에 대한 ▽▽▽▽. ▽. ▽.부터 이 사건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법정이자 상당의 지연손해배상으로써 연 5%의,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한 연 12%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

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계좌별거래내역(XX은행)



1. 갑 제2호증

계좌별거래내역(YY은행)

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각 1통

1. 소장부본

1통

1. 송달료납부서

1통

2000. 0. 0.

위 원고 ㅇㅇㅇ (서명 또는 날인)



관 할 법 원	※ 아래(1)참조	소멸시효	○○년(☞소멸시효일람표)
제출부수	수 소장원본 1부 및 피고 수만큼의 부본 제출		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절차 및 기 간	・항소(민사소송법 제390조) ・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(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)		

※ (1) 관 할

- 1. 소(訴)는 피고의 보통재판적(普通裁判籍)이 있는 곳의 법원의 관할에 속하고,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하여지나,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,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하여짐.
- 2.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음.
- 3. 따라서 사안에서 원고는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나 의무이행지(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하지만, 그 밖의 채무 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하므로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자기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: 민법 제467 조 제1항, 제2항)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음.